

도시 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Inheritance of Asset and Ancestral Rites
among Urban Families

계명대학교 대학원 가족복지전공

석사 김기경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복지전공

교수 박혜인

Dept. of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Kim, Ki Kyung

Dept. of Family Welfare, Keimyung University

Prof. : Park, Hye In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inheritance of asset and ancestral rites among urban families. The aged were selected out of th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in Seoul for questionnaires to figure out the subjects abov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 the attitude toward the inheritance of ancestral rites, it was positive for the eldest son or the one who inherited much asset 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to perform the ancestral rites. But it was negative for the married daughter or the adopted son to hold the ancestral rites.

2. For the inheritance behaviour of the ancestral rites, it is not common for the eldest son to inherit ancestral rites but common to perform it.

3. In the group who are positive to donnate their property to society, it is common not to prefer the eldest son in inheriting property. In the group who are positive about preferring the eldest son in inheriting property, they preferred the eldest son

in succession to an asset.

4. Most of sons, especially the eldest son, were preferred in inheriting asset and ancestral rites. And they were much more preferred in inheriting ancestral rites than asset.

◆ key word: 재산상속의식, 제사상속의식, 재산상속행동, 제사상속행동

I.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보다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가족생활도 변화하였다. 점차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계층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산업화 초기의 사회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내 지위변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서 상속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속도 그 내용과 방법, 시기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부모세대의 노후생활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들의 생활 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이광규, 1977) 크게 호주·재산·제사상속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우리 나라의 상속은 서구의 상속과는 달리 제사나 호주의 지위와 더불어 재산이 동시에 승계되는 제도로서 제사나 호주와 같은 지위의 승계가 주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승계는 가족형태나 가족관계 변화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법적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 상속에 유동성을 가지는 것은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이 되고, 자녀 특히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여겼다. 부모 또한 당연히 자녀에게 재산을 승계하였으며,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은 물론 조상에 대한 제사 의무를 행하였다(김주수, 1980).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식이 과거보다 많아졌으며, 자녀 역시 부모부

양의 의무와 조상제사에 대한 의무감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여중철, 1980). 또한 가족법이 자녀간에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장남 우선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경향이다.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기준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가족규범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합의된 가족규범을 상실한 경우 가족원간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 들어서는 제사를 장남이 모시는 전통적 방식에 반대하고 장남이 아니더라도 재산상속을 받은 자녀가 제사를 모시는 것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문영소, 1996). 뿐만 아니라 미래에 제사를 지내게 될 세대에서는 제사의례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선주, 2000). 따라서 제사상속에 종속된 형태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이 가족구성원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상속의식과 관행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나 이러한 오늘날의 상속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속관련 연구들이 사회적·종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써 가족학적인 접근에서의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며 특히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의 관계나 재산과 제사상속의 의식과 행동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내의 상속에 대한 의식과 실제 상속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한국 가족의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의 의식과 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재산과 제사 상속의 의식과 실제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보고인 만큼 이론적 배경 검토의 비중을 줄

이고, 특히 관념적인 의식과 실제로 행한 행동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유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상속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즉 상속 의식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그의 불일치로 인한 가족과 사회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래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산·제사상속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산·제사상속 행동관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산·제사상속에 대한 의식과 행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상속의 의미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와 호주권 및 제사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속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며,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이 생긴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문영소, 1996).

교환이론에 의하면 자녀의 부모부양은, 과거에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효행자라고 인정받으려는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장선주, 1991). 노인과 성인자녀관계는 그들이 가진 자원 즉,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권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모가 자립할 능력이 있을 때 자녀와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교환자원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상속이 행해지는 교환과정에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가족가치와 가족생활방식이 영향을 미친다.

2. 상속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 고대 상속에 관한 연구(유혜종, 1989)를 보면 삼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사유 재산권이 노비 중심에

서 점차 토지에 이르게 되어 상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상속(정기호, 1987)은 자녀에게 균분상속이 원칙이지만 父의 의사에 따라 자녀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계계승에 있어서는 적자우선, 남자우선이 되 여자도 가계상속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이성(異姓)의 子 즉 사위나 양자에게도 가계를 계승하였다.

조선시대는 종법제가 완성된 시대이며, 이론적으로는 유교가 한국에 토착화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재산상속법은 경국대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대표할 수 있으나, 당시의 관행인 관습법과 일치하지는 않았다(이희봉, 1976). 조선조에서 재산상속의 대전제는 조업사상(祖業思想)이다. 즉 상속 재산인 가산을 선조로부터 승계하여 자손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재산상속의 기본 관념이었고 혈족주의, 균분주의, 분할주의가 재산상속의 원리였다(최재석, 1987).

그리고 조선시대의 제사상속 또한 종법에 따랐으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였다. 종법의 계승원리는 적장자·적장손으로의 계승이었다(Deuchler, 1992).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조상의 제사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제도가 있었다. 장자에게 후사가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둘째 아들을 비롯한 다른 아들이나 외손에게 제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사방법은 그 당시 재산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던 균분상속 제도 때문이었다(김혜선·박혜인, 1994). 그 뒤 유교식 가정의례가 점차 보급되고 종법 의식이 강화되면서 제사도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정착되어갔고, 이에 따라 장자에게는 제사 뜻의 재산이 별도로 상속되었다(최재석, 1987).

3. 현행 민법에서 본 상속

민법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가족,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한 현행 상속법에서는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동일하다. 호주승계와 관계없이 상속분은 동일하다. 호적을 달리

한 여자에게도 상속분은 동일하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제사상속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다만 묘지에 속한 임야,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의 소유권을 호주상속인에게 계승시키는 데 그치고, 제사상속은 법률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4. 현행 재산·제사상속의 의식과 실태

1) 재산상속

1960~70년대만 해도, 상속시기는 父가 노쇠하거나 자손이 혼인하여 분가할 때가 일반적이며, 자손의 능력에 의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유언·유서·분재기 등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장남은 가계·호주·제사의 상속자로서 물심양면으로 우대를 받고,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경시하였다(김택규, 1964). 충남 교촌리의 재산상속 사례를 보면, 장남은 봉제사접빈객의 의례와 부모봉양의 일차적 책임 때문에 전재산의 40~50%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차남이하의 아들들에게는 그 수에 따라 대개 비슷한 비율로 분배하였고, 딸은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었다.

그후 1980~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태도는 변화를 보인다(김일철외, 1998). 1980년대 이후에 어머니와 딸이 상속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상속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상속비율에서는 장남단독상속이 35%, 장남우대·아들차별이 30%, 장남우대·아들차별·딸차별이 6%를 차지하였다(배종렬, 1997). 그리고 상속시기에서는 부모가 모두 살아있을 때 상속받았다는 응답이 44.5%였다. 상속범위와 상속비율에서 볼 때,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의 추구 및 가부장적 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가족법 개정 의도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상속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속 범위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소, 1996).

2) 제사상속

제사상속은 근래에 와서는 반드시 장자가 아니더

라도, 또한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김호태, 1994). 제사상속 의식은 반드시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보다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가능한 자녀 혹은 출가한 딸도 형편에 따라 제사를 모시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소, 1996).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의 연구(1998)에서는 제사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은 결과 가장 다수의 의견이 제사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제사를 어떻게 하겠는가'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여서, 제사를 위해 아들을 입양하던 유교적 규범에서 상당히 벗어난 태도를 나타내었다.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선주, 2000)에서는 현재의 제사풍속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질문에,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경우가 40%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종교기관이 대행한다, 장남이 계속 지낸다, 아들 딸이 나누어서 지낸다, 아들들끼리 나누어 지낸다의 순이었다.

3) 재산상속과 제사상속과의 관계

한국사회는 가장권의 계승이나 재산의 상속이 모두 제사권의 계승에 이차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 제사의 계승이 곧 장남우대 재산상속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제사의 횟수나 종류는 물론이고 제사에 참여하는 친족의 범위도 축소되었고, 경제적 비중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족에서 제사를 위주로 한 장남우대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배종렬, 1997).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위치해 있는 12곳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실제의 행동, 부모-자녀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상속의 내용은 본인이 '상속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인의 부모로부터의 상속경험이나,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이 제외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 둔다.

또한 상속행동에서 이미 '상속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상속 전의 소유재산 정도를 조사하는 것도 제외되었다. 상속은 사전상속인 증여와 사후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증여를 상속에 포함시켰으므로, 상속의 범위에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주택마련과 부동산, 각종 회원권, 차량 구입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비용만은 그 규모의 측정이 애매하여 제외시켰다. 상속의식을 묻는 문항은 문영소(1996)의 연구에서 재산상속 7문항, 제사상속 5문항을 선택하여 전체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12문항 중 재산상속에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묻는 2개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고, 그밖의 10개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하였다. 상속행동은 모두 14개 문항으로, 재산상속에 대한 문항 10개, 제사상속 문항이 4개 문항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정과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문영소(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애정척도와 갈등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 α 값이 애정변인은 0.61, 갈등변인은 0.72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과 절차

자료수집은 서울시에 위치한 3곳의 노인대학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999년 2월 2일부터 1999년 2월 20일 사이에 50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문항들의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고, 2000년 3월 5일부터 2000년 6월 10일 사이에 서울시에 위치한 12곳의 노인대학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310부의 응답지가 회

수되었으나 부실한 104부를 제외한 206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이어서 끝까지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낮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자녀관계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부모-자녀관계의 척도로 사용된 애정과 갈등 정도의 요인은 Cronbach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관계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재산·제사상속 실태와 의식과의 관계와 재산·제사상속 의식에 따른 행동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¹⁾.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71세 이상이 48.1%로 가장 많고, 66세~70세가 33.0%, 61~65세가 13.6%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7.9%,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36.9%, 중학교 졸업이 15.5%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내의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령층의 평균 교육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구구성은 장남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22.8%), 혼자 사는 경우(14.1%)로 나타났다. 그밖에 미혼자녀와 거주(13.1%), 차남이하의 아들과 거주(7.3%)의 순이었다. 기타(5.8%)의 항목에는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손자녀를 맡아 길러주는 경우 등이었다.

1) 연구결과의 표는〈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분할표는 생략하고 변인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χ^2 값과 유의도 수준을 제시할 것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6)

| 변 인 | 집 단 | 빈 도(%) |
|----------|---------------|-----------------------|
| 성 별 | 남 여 | 67(32.5) 139(67.5) |
| 연 령 | 60세 이하 | 11(5.3) |
| | 61~65세 | 28(13.6) |
| | 66~70세 | 68(33.0) |
| | 71세 이상 | 99(48.1) |
| 교육 수준 | 무학 | 19(9.2) |
| | 초등학교 졸업 | 78(37.9) |
| | 중학교 졸업 | 32(15.5) |
| | 고등학교 졸업이상 | 76(36.9) |
| 배우자 유무 | 배우자가 있음 | 105(51.0) |
| | 배우자가 없음 | 101(49.0) |
| 소유 재산 | 1000만원이하 | 30(14.6) |
| | 1000만원~5000만원 | 47(22.8) |
| | 5000만원~1억원 | 47(22.8) |
| | 1억원~3억원 | 41(19.9) |
| | 3억원 이상 | 36(17.5) |
| 자녀의 결혼여부 | 모두 결혼함 | 146(70.9) |
| | 일부만 결혼함 | 43(20.9) |
| | 모두 결혼하지 않음 | 17(8.3) |
| 형제 순위 | 장남, 장녀 | 103(50) |
| | 차남, 차녀 이하 | 103(50) |
| 가구 구성 | 독 거 | 29(14.1) |
| | 부부만 거주 | 47(22.8) |
| | 장남부부와 거주 | 76(36.9) |
| | 차남이하 아들과 거주 | 15(7.3) |
| | 미혼자녀와 거주 | 27(13.1) |
| | 기 타 | 12(5.8) |

2. 재산·제사상속 의식

1) 재산상속 의식

먼저 재산상속의 시기에서는 '부부 둘 다 생존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쪽의 배우자 사망 시'와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선행연구(문영소, 1996)에서도 재산상속의 시기를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물어본 결과, 생전에 재산상속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다.

이어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재산상속 의

식을 분석한 결과 성별($\chi^2=21.725***$), 교육수준($\chi^2=39.280**$), 소유재산($\chi^2=36.619*$)에 따라 재산상속의 대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경우, 재산상속 대상을 물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만, 자녀들에게만의 순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만, 배우자에게만의 순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에는 상속대상으로서 자녀들보다는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고,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보다는 자녀들을 더 우선시하였다. 이것은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즉 남성은 배우자가 생존한 상황에서 상속을 생각하므로 배우자를 우선시할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상속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본 결과, 대체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상속하기를 원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에서만은 자녀들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재산별로는 3억원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유재산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자녀들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소유재산이 많은 집단에서 자녀들보다는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였다. 이는 남성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은 점과 관련시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성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의 생존이 높다는 사실이 자녀보다 배우자를 더 우선시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재산의 사회환원에 긍정적인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재산상속 시 장남 우선에 대한 의식은 연령($\chi^2=26.206**$), 가구구성($\chi^2=36.06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재산상속 시 장자우선의 의식이 더 강하여 전통적이다. 가구구성에

서는 차남이하 아들부부와 거주하는 집단과 미혼자녀와 거주하는 집단에서 장자우선의 의식이 약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남이하 아들부부와 거주하는 집단에서 장자우선의 의식이 비교적 약한 것은, 장자우선의 의식이 약하여 차남 이하의 아들과 거주하는 것인지, 차남이하의 아들과 거주하게 되면서 장자우선의 의식이 약화된 것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고찰해 볼 과제라 하겠다.

재산상속 의식을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움이 필요한 자녀’($\chi^2=22.2096^{**}$)와 ‘애착이 가는 자녀’($\chi^2=16.412^{*}$)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재산상속은 ‘장남 우선’($\chi^2=8.132^{*}$)으로 해야 한다는 태도는 애정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갈등 변인과는 재산상속 의식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와 애정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도움이 필요한 자녀’와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녀나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우선시 하고자 하나, 그렇다고 갈등 관계에 있는 자녀를 재산상속에서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부모의 태도를 보여준다.

‘재산상속은 장남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자녀와 애정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즉 자녀와 애정이 낮은 집단이 오히려 장남을 우선시하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정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자녀와의 애정의 정도와 상관없이 전통적인 의식 즉 통념에 따라 장남을 우선시하였다. 반면 자녀와 애정이 높은 집단에서는 통념보다는 특정한 자녀와의 애정에 좌우되어 장남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는 애정이 특별히 가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도 소홀히 하지는 않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부모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사상속 의식

제사상속 의식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 재산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 제사는 절, 성당 등의 ‘종교기관’

에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항목에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가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도 좋다와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부정적이다. 문영소의 연구(1996)에서는 제사를 종교기관에서 지내게 하는 것에 비교적 부정적이어서,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하면 개방적인 태도라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할 때 과거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은 최근에 이르러 완만하게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남이하 아들’과 동거하는 집단과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부정적이었다($\chi^2=33.705^{*}$). 이를 집단은 이미 그들이 놓인 현재의 가족생활 자체가 장남우선의 관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 ‘출가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도 좋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교육수준($\chi^2=35.165^{*}$)과 자녀의 결혼유무($\chi^2=20.492^{**}$)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졸 집단과 고졸 이상인 집단이 무학인 집단과 초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출가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비교적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며, 자녀가 아무도 결혼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출가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비교적 통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chi^2=11.267^{*}$). 대체적으로 남성이 상속의식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호하고, 장남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듯하였으나 양자봉사 항목에서만은 오히려 남성이 전통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태도에 대하여는 자녀와 애정이 낮은 집단에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chi^2=28.105^{**}$). 이는 애정의 정도가 낮은 집단은 전통적 통념 그대로 제사의 장자상속에 긍정적인 반면, 애정의 정도가 높은 집단은 제사를 반드시 장남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장남

만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제사 관념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상속 의식에서는 장남 봉사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앞의 재산상속 의식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제사상속은 재산상속에 비해 전통적 관념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산상속자가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부모·자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애정이 높은 집단이, 재산상속은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제사만은 여전히 장남에게 모시게 하려는 의식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재산·제사상속 행동

1) 재산상속 행동

재산상속을 이미 한 경우가 34.5%, 아직 상속하지 않은 경우가 65.5%였고 재산을 이미 상속해 둔 이유에서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의 분가로 인한 경우(27.5%),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17.4%),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돋기 위한 경우(14.5%)의 순이었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서(18.9%)’와 ‘상속할 재산이 없어서(18.0%)’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12.6%)’, ‘배우자가 살아있으므로(6.3%)’,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있으므로(5.8%)’, ‘아직 아무도 결혼하지 않아서(2.4%)’의 순이었다.

일찌기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설계 계획은 축소하거나 소홀히 하는 반면,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서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는 등 자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박재간, 1990), 재산상속에서도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이전하고 있다(배종렬, 1997).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정 정도 노후준비를 위해 또 자녀의 독립심을 위해서 등의 이유로 상속을 하지 않은 응답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변화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

다. 또한 이것은 본 연구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은 재산상속에 포함시키고 자녀교육비는 상속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일면 해석된다.

그런데 재산상속의 이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결혼’이나 ‘분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산상속을 아직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65.5%) 것을 볼 때, 이는 점차 자신의 노후대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 등으로 재산상속을 유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층들의 상속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노후대처를 위하여 재산상속 연기가 나타나고 있다.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53.5%)와 우대하지 않은 경우(46.5%)는 비슷하였으나 우대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에 그 이유로는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가 68.4%로 가장 많았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15.7%)’,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13.1%)’가 그 다음이었다. 특히 장남과 동거하는 집단이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다. 그러나 장남과 동거하는 집단 중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도 24.2%를 차지한다. 이는 노후에 동거하는 자녀에게 재산상속의 비중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재산상속 비율에서는 아들들에게 상속한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고 특정 아들 한 사람에게 준 경우가 23.5%, 딸들에게도 주었으나 아들보다는 적게 준 경우가 23.5%,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상속한 경우가 11.8%였다. 최신덕(1978)의 연구에서 아들 단독상속이 36.7%, 아들균분이 35.2%, 자녀균분이 10.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특정 아들 한 사람에게 준 경우는 줄어들었고 아들들에게 나누어 상속한 경우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딸에 대한 재산상속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겠다. 요컨대 재산상속 행동에서 특정 아들 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들에게 골고루 상속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가족법에는 자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상속을 강제로 집행하는 법률로 정한 상속분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이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의 실제로 행해지는 상속관행은 남녀균분의 법률과 큰 차이가 있다.

재산상속 시의 갈등여부에서는,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85.9%이고, 갈등이 약간 있었던 경우가 12.7%,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경우는 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는 부모가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한 경우였다. 갈등은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기를 원하는 특정 아들이 재산을 많이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재산상속 시 갈등이 있었던 10명의 사례 중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장남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또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장남과 차남의 구별이 없어진 상속법 개정과도 관련되고, 또한 과거와 비교해서 장남에게 주어진 의무는 줄지 않았으나 혜택은 줄어든 것과도 관련되었다. 즉, 장남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을 더 받기를 바라는 반면,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재산상속법의 변화에 부응하여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생활의 기반을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신들도 재산을 상속 받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양자가 다 사회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자신의 의무·책임은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집착한 결과라 하겠다. 이것은 사회규범이 변화하는 격동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갈등의 단초이기도 하다.

이어서 재산상속행동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 아들 한 사람에게만 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정 아들 한 사람에게만' 상속한 것은 주로 장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장자우선의 사고가 더 깊음을 알 수 있다. 또 아들들보다는 적지만 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한 비율과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상속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높다. 그러므로 응답자들의 경우, 남녀평등의 사고와 장자우선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상속 시의 장남우대 여부는 성별($\chi^2=7.289^{**}$), 배우자 유무($\chi^2=3.895^{*}$), 가구구성($\chi^2=11.4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경우에 역시 장남을 더 우대하였다. 재산상속 시의 장남우대 여부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누구인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애정이 높은 집단이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였다($\chi^2=9.132^{**}$). 애정이 낮은 집단의 경우 실제로 재산상속에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재산상속 의식에서의 결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상속 시 장남우대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의식으로는 정이 가는 자녀라고 하여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자는 않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속행동에서는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즉 생각과 행동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어 가족 갈등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그 결과 분배만족도에서 애정이 높은 집단은 애정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chi^2=12.934^{*}$).

2) 제사상속 행동

제사상속은, 이미 상속한 경우가 57.8%, 상속하지 않은 경우가 42.2%로 제사를 상속한 경우가 더 많았다. 제사는 누가 지내는가에서는 장남이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차남이하의 아들, 기타, 종교기관, 딸의 순이었다. 제사상속을 받은 사람을 재산상속 시 더 우대한 경우는 66.7%, 그렇지 않은 경우가 33.3%였으며, 동거하는 자녀에게 제사를 상속한 경우(78.6%)가 그렇지 않은 경우(21.4%)보다 많았다. 이는 제사와 호주권에 따라 재산이 함께 상속 되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결과이다. 그리고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53.5%였던 비해, 제

사를 장남이 지내는 경우는 74.4%였다. 제사상속에 서는 재산상속의 경우보다 장자우선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더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사를 장남이 지내는 경우, 아들 단독상속이 60%로 가장 많았고, 아들·딸 불균등 상속이 전체의 21.8%였다. 그런데 제사는 장남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에 비해 재산상속을 장남에게 단독 상속한 경우는 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딸 불균등 상속과 아들들 상속, 아들·딸 균등 상속이 모두 40%여서 제사상속은 대부분 장남에게 하고 있으나 재산상속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재산상속 시의 가정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상속 여부는 연령($\chi^2=11.854^{**}$), 자녀의 결혼 여부($\chi^2=7.274^{*}$), 가구구성($\chi^2=30.17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당연히 연령이 높은 집단이 제사를 상속하는 경우가 더 많고, 자녀가 모두 결혼한 경우가 제사를 상속한 사례가 더 많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자녀 제사상속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가계관리와 손자녀 양육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남이 아닌 아들과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구성에서는 장남 부부와 거주하는 60명 중 55명(91.7%)이 동거자녀(장남)에게 제사를 상속하였으나 차남이하의 아들부부와 거주하는 12명 중에서는 8명(66.7%)이 동거자녀에게 제사를 상속하였다. 미혼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동거자녀에게 제사를 상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이 동거자녀와 제사상속의 대상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과거 장자 또는 장손에게만 제사를 상속했던 것에 비하면 장자우선의 제사상속에서 어느 정도 장자가 아닌 아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4.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

1) 재산상속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

'재산상속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태도와 재산상속의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chi^2=$

16.155***). 재산상속을 이미 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살아있을 때'(45.2%)에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이 가장 많고, 재산상속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 사망한 후'(85.5%)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의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경우에는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는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많았다($\chi^2=13.246^{**}$).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와 사회환원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를 상속의식이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것이라고 볼 때, 재산상속 의식이 근대적인 집단에서 재산상속 행동 역시 근대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식과 실태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였으나 애착이 가는 자녀를 선호하는 집단($\chi^2=8.996^{*}$)이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경우는, 전통적인 장남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경우이다. 즉, 애착이 가는 자녀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 시 장자우선의 전통적 통념을 고집하지 않는 데 비하여, 애착이 가는 자녀에 대한 선호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통념에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제사상속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는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많고,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한 경우는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chi^2=15.458^{**}$). 즉 제사상속 의식이 전통적인 집단이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도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태도가 25%에 이른다. 즉 제사상속자를 재산상속 시 절대적으로 우대하였던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추세라고 보인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태도는 '제사상속자를 재산상속시 우대하는가'의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chi^2=20.713^{**}$). 그러나 33%가 장남제사를 당연시하면서도 제사상속자에 대한 재산상속 우대에 부정적이어서, 아직은 장남이 제사상속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족간의 갈등이 예측되는 측면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재산·제사 상속에서 장자우선이 절대적이었던 전통 관념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인다.

5. 종합논의

이와같이 한국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을 알아보고 동시에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자녀 관계변인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밝히고, 또한 재산·제사상속의 의식과 행동과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재산상속 의식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과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 즉 자녀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하고 장남이데올로기나 가족주의에 덜 젖어 있어 애정이 더 가는 자녀와 경제적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재산상속을 우선시하는 열린 태도의 발달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이고 경제적 여유를 지닌 집단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고연령층과 장남동거 가족집단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장남우선, 아들우선의 전통이념을 고수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제사상속 의식에서는 차남이하 아들과 거주하거나 미혼자녀와 거주하는 집단에서 장자봉사에 부정적이고, 고학력집단과 미혼자녀를 둔 집단이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즉 제사상속의식을 통하여 응답자의 정체감에 따라 서로 판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장남과의 동거라는 기준 통념에 반하여 둘째 이하의 아들이나 딸과 동거하는 집단이 딸의 봉사에 긍정적이고, 특정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이 오히려 장남봉

사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남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집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제사에 대해서 조차 장남우선주의를 버린 반면, 특정한 어느 자녀와 정이 없는 부모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통념 그대로의 장남봉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제사상속의식에서 재산상속의식과 상이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나 종교기관에서의 제사대행에 개방적인 새로운 경향에 반하여 남성집단이 제사만은 입양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족관념을 고수하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제사로 상정되는 가계계승에 여전히 집착하는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어느 세대까지 유효할까는 좀 더 정교한 연구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재산상속 행동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상속을 연기하는 산업사회적 특징과 장남우선의 농경사회적 상속행동이 모순적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가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반증해준다. 점차 장남 단독보다는 지차 아들과 딸을 포함시키는 추세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장남동거집단이, 배우자 없는 집단이 장남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더욱 여기서 유념할 것은 장남에게만 주었다는 이유와 다른 지차아들에게도 주었다는 서로 상반된 이유가 재산상속에서 갈등 요인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족문제에는 유일한 정답은 없다. 상황 따라 적절한 대처가 요청될 뿐이다.

넷째, 제사상속 행동을 종합하면, 재산상속은 아직 하지 않았어도 제사상속은 더 빨리 하는 경향이었고, 대체로 장남봉사의 경향이었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는 예상된다. 적은 비율이지만 문제는, 제사를 상속받은 자녀를 배려하여 재산상속에서 우대해 주는가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제사를 지낼 때 그에 상응하는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섯째, 재산상속을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아직도 재산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경우가 많았고, 재산의 사회환원에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재산상속 시장

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식은, 역시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하여야 한다에 긍정적인 집단에서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장남봉사에 긍정적인 집단에서 또한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한 경우가 많고, 재산상속 시 제사상속자를 우대한 경우가 많았다. 지배적으로 장남 우선의 상속경향인 중에서도 일부 사회환경에 개방적이고, 애착자녀에게 재산상속을 우선시하는 의식과 행동은 앞으로의 미래 가족생활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양상이다.

V. 결론 및 제언

재산·제사상속의 의식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그 행동은 아직도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재산·제사상속 시 대부분 아들, 특히 장남을 우대하나 재산상속보다는 제사상속에서 장남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재산상속이 제사상속보다는 각각의 개인이 지난 의식에 영향을 더 받고 있으며, 제사상속은 아직은 지배적인 전통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재산상속의 경우는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있으므로 제사상속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갈등의 정도가 상속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연구분석 한 결과, 부모-자녀관계의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상속의 의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정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상속 시 애정이 가는 자녀를 우대하지만, 갈등이 있는 집단에서는 상속 시 갈등관계에 있는 자녀를 홀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과거에 비해 제사의 의무가 줄어든 현재에도 장남

이 부모를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재산상속 시 장남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991년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남녀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속실태는 아직도 아들 중심의 상속관행을 보이고 있고 아들·딸 균분상속의 사례는 전체 상속사례의 10% 내외여서 법과 관행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부모의 경제적 후원이 사회경제적인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문제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산상속과 달리 제사상속 시에만 장남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가족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의식이 약화되고 가족의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통과의례가 혼례, 상례에서와 같이 점차적으로 사회화되고 있는 것처럼 제사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 보다는 멀지 않은 미래에 제사의 사회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된다. 오늘날 제수가 마련된 제사상의 택배서비스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제사의 사회화가 점차 일반적인 현상으로 변화된다면 재산상속 의식과 실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과거에 제사상속의 부수적 형태로 행해지던 재산상속이 제사상속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의 일면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상속과 제사상속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상속 갈등에서 나타나는 가족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본다. 특히 재산·제사상속은, 가족의 대표성, 상징성 이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 등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는 만큼 서로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갈등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가족복지 차원의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이밖에도, 본인의 상속경험이 상속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상속 전의 동산·부동산의 소유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그리고 가족원간의 상속과정을 통한 정서 관계를 살피는 질적

연구도 기대된다. 그리고 가족원의 종교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특히 제사상속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심층연구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으로 덧붙인다.

【참 고 문 헌】

- 고선주(2000).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7-42.
- 김일철 외(1998). 종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서울:백 산서당.
- 김주수(1980). 친족·상속법. 서울:법문사.
- 김택규(1964).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 대구:청구 대출판부.
- 김혜선·박혜인(1994). *한국가정생활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 김호태(1994). 안동지방의 외손봉사에 대한 고찰. *안동문화연구* 8집.
- 로저 자넬리·임돈희(2000).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서울:일조각.
- 문영소(1996). 한국가족의 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중 대박사학위논문.
- 박명희·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2), 91-107.
- 박재간(1990). 노후의 재산상속과 재산관리. *노인생활* 78.
- 박혜인·홍현주(1988).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과학논집* 13, 53-63.
- 배종렬(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경북 대박사학위논문.
- 여종칠(1980). 취락구조와 신분구조. *정신문화연구원 사회연구실.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전통적 생활 양식 연구(上)* 2, 95-151.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유혜종(1989). 한국고대 재산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전국대석사학위논문*.
- 이광규(1977).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일지사.
- 이창기(1987). 제주도 제사분할의 사례연구. *민족문화논총* 13, 193-212.
- 이희봉(1976).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 서울:일신사.
- 장선주(1991).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감정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9.
- 정기호(1987). 고려시대의 상속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석사학위논문.
- 최신덕(1978). 한국의 상속현황에 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학* 10, 124-127.
- 최재석(1987).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일지사.
- Deuchler, M.(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and London:Harvard University Press.